

9-2.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상시근로자를 증대시킨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공제



청년 등(상시근로자 등) 직전
과세연도 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인원 X 700만원 등
법인세(소득세) 공제

지원 대상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기업
- 다만, 소비성서비스업*은 제외

*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숙박업 제외)
주점업(관광유희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유희음식점업 제외)
그 밖에 오락 · 유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상시근로자³⁰⁷⁾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기간이 1년 이상은 제외)
- 단시간근로자³⁰⁸⁾ 다만, 1개월간 60시간 이상 근로하면 포함
- 임원³⁰⁹⁾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 최대주주 등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친족³¹⁰⁾
-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30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10항

308)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9호

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310)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청년 등 상시근로자³¹¹⁾

-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 그 기간(6년 한도)은 빼고 계산(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에 근무하는 청소년은 제외)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근로자

지원 내용

-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

[고용증가인원 1인당 세액공제액]

구 분	중소기업 (3년 지원)		중견기업 (3년 지원)	대기업 (2년 지원)
	수도권 내	수도권 밖		
청년 등 외 상시근로자	700만원	770만원	450만원	없음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만원	1,200만원	800만원	400만원

유의사항

- 사후관리
 - ①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또는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 시,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세액추징
 - ② 추징금액은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어도, 공제받은 세액을 납부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³¹²⁾ 중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 세액감면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함
- 최저한세 적용대상
- 농어촌특별세 과세

절차 및 제출서류

-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27조 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3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3항

312)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7항

전년대비 달라진 점

개정 전	개정 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고용이 증가한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 과거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으면 추가 공제 및 추가납부세액 계산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Q. 질문 1

나사장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본점외 지점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점은 상시근로자가 감소하였으나 지점은 상시근로자가 증가하였다. 고용증가를 판단할 때 근로자 수는 본 · 지점별 기준으로 하는지 법인 전체로 하는지 세무사에게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본점 및 지점을 운영하는 법인의 경우 세액공제 및 공제세액의 추징 여부를 판단함에 상시 근로자의 수는 본점 및 지점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³¹³⁾

Q. 질문 2

나사장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2023년에 고용이 증가하여 고용증대세액공제 신청을 하였다. 2022년 10월에 입사한 A근로자가 만 27세로 입사 당시 청년에 해당하여 청년 상시근로자 수에 산입하였다. 2025년은 A근로자가 만 30세가 된 경우 다음 사업연도에 청년 상시근로자로 보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A. 세무사 답변

“직전 과세연도에 29세(직전 과세연도 중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인 청년 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30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의 인원 감소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 계산 시에만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에 해당한 자는 이후 과세연도에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로 보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A근로자는 추가 세액공제(2, 3차 연도 세액공제)의 적용 시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로 보아야 합니다.³¹⁴⁾

313) 서면-2019-법인-3754

314) 서면-2020-법인-6004

Q. 질문 3

나사장은 부천에 소재하는 소기업(제조업)인 주식회사 철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사장은 작년에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고용이 감소된 경우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하였습니다. 나사장은 세무사에게 다음의 경우도 세액계산을 의뢰하였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 청년 감소, 청년 외 증가]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청년 상시근로자수 ①	2	5	1
청년 외 상시근로자수 ②	1	3	5
전체 상시근로자수 ① + ②	3	8	6

A. 세무사 답변

“CASE 2 의 경우 전체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가 감소하지 않은바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1. 2024년도 공제금액 계산 (4,700만원)

1) 1차년도 공제금액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5 - 2 = 3$ (명) 증가

청년외 : $3 - 1 = 2$ (명) 증가

총 5명 증가

(2) 공제금액 계산

청년 : $3(\text{명}) \times 1,100(\text{만원}) = 3,300(\text{만원})$

청년외 : $2(\text{명}) \times 700(\text{만원}) = 1,400(\text{만원})$

총 4,700(만원) 공제

2. 2025년도 공제금액 계산 (공제금액 없음)

1)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Delta 4$ (명) 감소

청년외 : $5 - 3 = 2$ (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1항

(생략)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한 바 1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2)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Delta 4$ (명) 감소

청년외 : $5 - 3 = 2$ (명) 증가

총 2명 감소

(2) 공제금액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 7 제2항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하생략)

→ 전체상시근로자의 수(6명)가 최초로 공제 받은 과세연도(2024년, 8명)에 비하여 감소한 바, 2차년도 공제금액 없음

3. 2025년도 납부(추징)할 금액 계산

1) 1차년도 납부금액 (2,600만원)

(1) 근로자수 계산

청년 : $1 - 5 = \Delta 4$ (명) 감소

청년외 : $5 - 3 = 2$ (명) 증가

총 2명 감소

(2) 납부금액 계산

청년 : $\{(\textcircled{1}3(\text{명}) - \textcircled{2}2(\text{명})) \times (\textcircled{3}1,100(\text{만원}) - \textcircled{4}700(\text{만원}))\} + (\textcircled{5}2(\text{명}) \times \textcircled{6}1,100(\text{만원})) = 2,600\text{만원}$

청년외 : 청년외 인원 증가한 바 납부금액 없음 총 2,600(만원) 납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 7 제5항 제1호 가목

-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가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이상인 경우

{ $\textcircled{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textcircled{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circled{3}$ 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 $\textcircled{4}$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 ($\textcircled{5}$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times $\textcircled{6}$ 법 제29조의 7 제1항 제1호의 금액)

→ $\textcircled{1}$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4명 → 3명(5-2))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textcircled{2}$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textcircled{3}$ 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textcircled{4}$ 같은 항 제2호의 금액 (700만원)

$\textcircled{5}$ 상시근로자의 감소한 인원 수 (2명)

$\textcircled{6}$ 법 제29조의 7 제1항제1호의 금액 (1,100만원)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3. 3. 20.)

(양쪽)

사 업 연 도	2025. 1. 1.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명	주식회사 질세
	~ 2025.12.31.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① 각 사 업 연 도 소 득 계 산	㉑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01			
	소 정 금 액	㉒ 익금산입	02		
		㉓ 손금산입	03		
	㉔ 차가감소득금액 (㉑+㉒-㉓)	04			
	㉕ 기부금한도초과액	05			
	㉖ 기부금한도초과이월액 손금산입	54			
㉗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㉑+㉕-㉖)	06				

② 과 세 표 준 계 산	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㉓-㉖)			
	㉙ 이월결손금	07		
	㉚ 비과세소득	08		
	㉛ 소득공제	09		
	㉜ 과세표준 (㉘-㉙-㉚-㉛)	10		
㉝ 선박표준이익	55			

㉞ 과세표준(㉜+㉝)	56		
㉟ 세울	11		
㊱ 산출세액	12		
㊲ 지점유보소득 (「법인세법」 제96조)	13		
㊳ 세울	14		

㊴ 감면분 추가납부세액	29		26	000	000
㊵ 차감납부할세액 (㊴-㉞+㉟)	30				

양도 차익	㊶ 등기자산	31			
	㊷ 미등기자산	32			
⑤ 토 지 등 양 도 소 득 에 대 한 법 인 세 계 산	㊸ 비과세소득	33			
	㊹ 과세표준 (㊶+㊷-㊸)	34			
	㊺ 세울	35			
	㊻ 산출세액	36			
	㊼ 감면세액	37			
	㊽ 차감세액(㊼-㊹)	38			
	㊾ 공제세액	39			
	㊿ 동업기업 법인세 배분액 (가산세 제외)	58			
	1 가산세액 (동업기업 배분액 포함)	40			
	2 가감계(㊿-1+2+3)	41			
	기 납 부 세 액	3 수시부과세액	42		
		4 ()세액	43		
		5 계(㊿+3)	44		
	6 차감납부할세액(5-4)	45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을)] <개정 2021. 3. 16.>

(3쪽 중 제1쪽)

사 업 연 도	2025.1.1.	공제감면세액 및 추가납부세액합계표(을)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 2025.12.31.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5. 추가납부세액

⑫ 구		분	⑬ 근거법 조항	코드	⑭ 대상금액	⑮ 세 액
조 세 특 례 제 한 법	⑮	준비금환입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1		
	⑮	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772		
	⑮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 * 제5조·제11조·제24조·제25조·제25조의 2·제26조·제94조·제96조		773		
	⑮	기 타		775	26,000,000	26,000,000
	⑮	소 계		780	26,000,000	26,000,000
법 인 세 법 등	⑮	기공제 원천납부세액 추가납부		781		
	⑮	업무관련부동산 지급이자 손금부인에 따른 증가세액		782		
	⑮	외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3		
	⑮	내국법인의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상당액		786		
	⑮	혼성금융상품 관련 추가 손금불산입 이자상당액		787		
	⑮	기 타		785		
	⑮	소 계		784		
⑮ 추가납부세액 합계(⑮ + ⑮)				790	26,000,000	26,000,000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부표 6] <개정 2013.2.23>

(앞쪽)

사 업 연 도	2025.1.1.	추가납부세액계산서(6)	법 인 명	주식회사 절세
	~ 2025.12.31.		사 업 자 등 록 번 호	000-00-00000

3. 공제감면세액에 대한 법인세 추가납부액

⑲ 구 분	⑳ 공제감면 받은연도	㉑ 추가납부 사유	㉒ 공제감면 세액	가 산 액			㉓법 인 세 추가납부액 (㉒+㉔)
				㉔이월 (일변)	㉔기간	㉔금액 (㉒×㉓×㉔)	
1	2024	청년근로자 감소	26,000,000	-	-	-	26,000,000
계			26,000,000				26,000,000

4. 법인세 추가납부세액 합계 ㉕(㉑+㉒+㉓)

26,000,000

